

## 소득공제 안내 자료

### 가. 공제대상

- (공통사항)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

#### ① 종합소득 공제

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	소득공제 한도	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	특별공제 종합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1천5백만원 이하 : 100%</li><li>·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50%</li><li>· 5천만원 초과 : 30%</li></ul>	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벤처기업</li><li>· 기술성 평가* 통과 창업 중소기업 (3년 미만)</li></ul>	적용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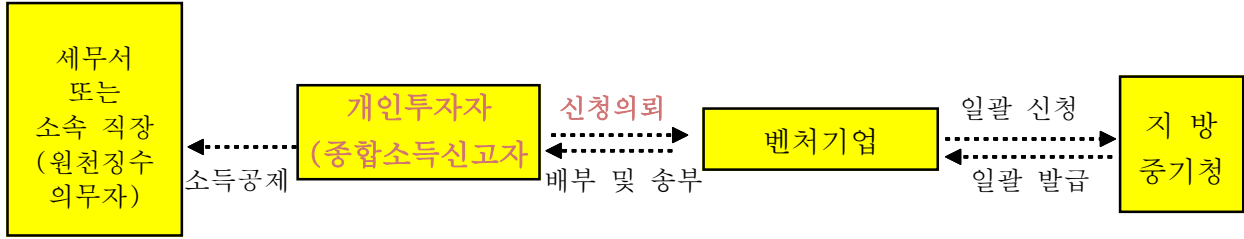
\*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, 제4호

#### ② 양도소득 비과세

-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(단, 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 제외)로서,
-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

\*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(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(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제1항

## 나. 조세감면 절차



- ①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
- ②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(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전남지방중기청)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(on-line 또는 공문 송부)
- ③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,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(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)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
- ④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(별지2호)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 등에게 제출

다. 신청자 : 벤처기업이 일괄신청

라.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

## □ 방문 신청

○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-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(생략 가능)
- 투자자 명세표 1부.
-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[별지 1] 1부.
-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1부.  
(접수자가 온라인 확인가능시 생략 가능)
- 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.  
(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)
- **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**
-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 
(접수자가 확인가능시 생략가능)

※ 투자확인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발급하여 우편 송부

♣ 협조사항 :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제출시 통장 입금일자 순서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

♣ 유의사항

-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,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
[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(정의)에 해당되는 기업]
-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제외

**【별지 1】**

[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]

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						
출 자 자 자 (투 자 자 자)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	-	
	③주 소					
제 출 처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의무자	④법인명(상호)				
		⑤대표자(성명)		⑥사업자 등록번호	- -	
	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조합	⑦소재지(주소)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서장	⑧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		
투자조합관리자등		⑨법인명(상호)		( ☎ : - )		
출자(투자)금액명세						
출자(투자)내역				벤처기업투자내역		
⑩출자일 (투자일)	⑪조합명 (위탁회사명)	⑫출자총액	⑬출자금액 (투자금액)	⑭투자일	⑮투자 기업명	⑯투자금액
. . .						
. . .						
. . .						
계				계		
<p>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(투자)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인자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인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천징수의무자 귀하</p>						
<p>1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2. ⑭~⑯란은 개인투자조합·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.</p>						

주) 위 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, 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 
투자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.

【별지2호】 (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임)

[별지 제5호 서식]

(앞쪽)

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										처리기간										
										즉 시										
①성 명					②주민등록번호						-									
③주 소											( ☎ : - )									
출 자 ( 투 자 ) 금 액 명 세																				
④출 자 일 (투 자 일)	⑤ 벤처기업 명	⑥출 자 금 액 (투자금액)	⑦공제대상금액	⑧한 도 액	⑨공 제 금 액															
. . .																				
. . .																				
. . .			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								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
귀하										수수료										
										없음										
구비서류 :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																				

22226-24711민  
'99. 3. 31 개정승인

210mm×297mm  
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)

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.

(뒤쪽)

## 작성요령

1. ⑥란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
가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: 그 출자액

나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: 그 투자액

다.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: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

$$\text{거주자가 개인투자 조합에 출자한 금액} \times \frac{\text{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}}{\text{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}}$$

라.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: 그 투자액

2. ⑧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중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.